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29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정책실장 강병호)

1. 제안이유

○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바,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설함

(1)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으로 하고,(안 제3조제1항제5호)

(2)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8. 16. ~ 9. 5.)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제안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은 3,300가구로 추정됨

○ 또한, 개정안을 통해 대상자에게 20만원의 생활수당지급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임.

- 현재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은 3인 가구 기준 월 335천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국민가구소득의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196천원에 비해서도 564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독립유공수당을 지원해 이들의 소득을 최대 중위소득의 85%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19년도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서울형 긴급복지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청년·꿈나래통장 희망온돌기금
75%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국가긴급복지
70%	1,194,906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교육급여 차상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주거급여 서울형기초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의료급여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국가가 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한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이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

○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운데서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이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대상자들은 기존의 지원금에 생활지원수당을 받는다해도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29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바,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설함

(1)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으로 하고,(안 제3조제1항제5호)

(2)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8. 16. ~ 9. 5.)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5.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독립유공자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0년 3월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는 약3,300명으로 추정(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등록자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독립유공생활수당	6,600	7,920	7,920	7,920	7,920	38,28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6,600	7,920	7,920	7,920	7,920	38,28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6,600	7,920	7,920	7,920	7,920	38,28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유지은 (☏ 2133-733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19년 7월)에 따른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설

○ 지급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市 거주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 3,300여명('19.3월 기준)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38,28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연간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비용 ≒ 7,920,000천원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대상자 × 월 지원액 × 12개월

= 3,300명 × 200천원 × 12개월 =7,920,000천원

※ '20년 ≒ 6,600,000천원 (3월부터 시행 예정)

= 3,300명 × 200천원 × 10개월 =6,600,000천원